

한국성서대학교 장학규정

제정 : 1998. 04. 06.
 전면개정 : 2020. 10. 08.
 개정 : 2021. 11. 05.

담당 : 교학팀(950-5406)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장학금 구분)	제4조(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제5조(장학 및 학생복지 지도위원회)	제6조(대상)	제7조(장학금의 신청방법)	제8조(지급방법)
제9조(이중수혜)	제10조(자격상실 및 반환조치)	제11조(승인과 공고)	제12조(대상)
제13조(장학금의 신청방법)	제14조(지급방법)	제15조(이중수혜)	제16조(자격상실 및 반환조치)
제17조(외부장학)	제18조(기타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학칙 제65조에 의거 학생들로 하여금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여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함과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 사항은 국가기관 및 외부장학단체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 구분)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교육부 등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과의 협약과 관련된 장학금 집행시 의무대응비율이 적용된 교내장학금도 포함)
2. 기금장학금 : 이전 학년도에 적립된 기부금 및 학과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3. 교외장학금 : 당해 학년도에 외부장학재단, 단체 및 개인이 기부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4. 국고장학금 : 교육부 등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제4조(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장학종류와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부는 별표1, 대학원은 별표2과 같다.

제2장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

제5조(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 장학금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자문을 위하여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를 두며, 장학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학원의 장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자문한다.

제3장 학부장학금

제6조(대상) ① 본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외부장학단체, 기부자가 대상에 대한 자격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규 8학기 이내 등록한 자(단, 유급, 복수전공, 편입 등으로 인한 초과학기자 중 최소 10학점 이상 등록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2. 직전 두 학기 중 징계 사실이 없는 자
3. 직전학기 기준으로 12학점(신·편입생, 재입학생, 장애학생 및 졸업학기자, 외국인유학생 제외) 이상 이수한 자(개정 2021.11.05.)
4. 경건훈련을 Pass한 자

② 본교 신·편입생, 재입학생이 입학한 첫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부를 마친 자

제7조(장학금의 신청방법)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공지를 확인하고,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지급방법에 따라 학비감면 장학금과 학비감면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은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장학금을 환불할 경우, 학자금의 상황을 우선으로 처리하며 그 외에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④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교내장학금
2. 국고장학금
3. 교외(외부)장학금

제9조(이중수혜)

①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② 근로장학, 일립생활관장학, 마일리지장학,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에 의한 장학 등 생활비 또는 학업보조 성격의 장학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제10조(자격상실 및 반환조치) 해당 학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이 상실되며, 장학금을 취소 또는 반환할 수 있다.

1. 휴학생(근로장학금,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장학금은 제외하며, 성적장학은 보류하였다가 복학시 지급할 수 있다.)

2.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자퇴생 또는 제적생
4.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학생
5. 2학기 이상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연속장학생의 경우 계속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제11조(승인과 공고) ① 장학금 지급내역에 관하여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장학대상자에게 학사 인트라넷을 통해 통보한다.

②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제12조(대상) ①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외부장학단체, 기부자가 대상에 대한 자격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재학생은 M.A / Th.M/ M.SN/ M.Sw / M.Ce은 4학기 이내 등록한 자, Ph.D / M.Div는 6학기 이내 등록한 자,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내 등록한 자 (복수전공·학기 및 학업연장 학기는 지급되지 않는다.)
2. 직전 두 학기 중 징계 사실이 없는 자
3. 경건훈련을 Pass한 자
4. 성적장학의 경우 위 1~3사항에 해당되는 자로 이수학점이 신학대학원 15학점, 사회복지대학원 9학점, 보육대학원 9학점이상으로 평균평점이 3.85이상이어야

② 본교 신·편입생, 재입학생이 입학한 첫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부를 마친 자

제13조(장학금의 신청방법) 장학금의 지급신청은 매 학기별로 하고,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지급방법에 따라 학비감면 장학금과 학비감면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② 장학금의 지급은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③ 장학금을 환불할 경우, 학자금의 상환을 우선으로 처리하며 그 외에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제15조(이중수혜) ①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② 근로장학, 외국인장학2 등 생활비 또는 학업보조 성격의 장학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제16조(자격상실 및 반환조치) 장학금을 받은 학생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장학금을 반환 또는 취소할 수가 있다.

1.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2. 휴학자(단, 휴학에 있어서의 성적장학은 휴학시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복학시 지급할 수 있다.)
3. 자퇴자 또는 제적자 및 수료자

4.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5.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17조(외부장학)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부는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에서,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2학기는 이전 장학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부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종류	지급대상	지급방법	성적 기준	지급 기간	지급금액	교내·외 구분
재학생 성적장학	① 학과학년별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이상(단 4학년은 15학점 이상) 평점평균 3.8이상인 자 (F나 I가 없는 자, 이수과목취소로 성적 수정시 대상자 제외)(개정 2021.11.05.) ② 동점자는 평점평균 < 이수학점 < 이수과목 점수 총합 ③ 장학금을 개강 전에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 ④ 전체수석 배출 학과학년은 차점자	학비감면	3.8	해당 학기	수업료 전체수석 100% 최우수 70% 2등 50%, 3등 30%	교내
	가을학기 졸업예정자로 성적장학 기준을 준하는 자	학비감면	3.8	해당 학기	수업료 30%	교내
신입생 성적장학	1학년 입학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수능 반영영역 평균1등급 이내 중 1명)	학비감면	3.0	4년	수업료 100%	교내
	입학시 각 학과에서 성적 최우수자(수시, 정시 각각)	학비감면	3.0	1년	수업료 100%	교내
교직원장학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와 직계자녀 (교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으로 사학연금에 등록된 자로 한다. 단, 계약직은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에서 결정)	학비감면	2.0	4년	수업료 본인 50% 배우자 및 자녀 80%	교내
법인직원장학	한국복음주의학원 법인 및 유관 기관 직원 (단, 계약직은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에서 결정)	학비감면	2.0	4년	수업료 50%	교내
한국성서 선교회장학	한국성서선교회 소속 미자립 교회의 임명된 교역자(교육전도사 포함) 및 배우자와 직계가족	학비감면	2.0	4년	수업료 교역자 50% 배우자 및 자녀 40%	교내
	한국성서선교회 소속 교회의 담임교역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해당 교회에 임명된 교역자(교육전도사 포함)	학비감면	2.0	4년	수업료 일정액	교내
PK장학	① 미자립 교회 혹은 단독 목회자 자녀로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 국외에서 활동하는 파송 선교사의 자녀 또는 과거 파송되어 활동하였던 선교사의 자녀로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	학비감면	2.0	1년	수업료 일정액	교내
가족장학	본교(대학원 포함)에 부부, 부자, 부녀, 형제 등 가족이 2인 이상 동시에 재학 중에 있는 자	학비감면	2.0	4년	각각 수업료 30%	교내
보훈장학	국가 법령에 의해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로 결정된 자	학비감면	별도 기준	4년	등록금 50%	교외
보훈감면					등록금 본인 100% 직계자녀 50%	교내
남북하나장학	①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② 관계 법령에 의해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로 결정된 자	학비감면	별도 기준	4년	수업료 30%	교외
남북하나감면					수업료 50%	교내
외국인 면학장학	외국인 유학생으로 매학기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단, 첫 학기 성적기준 제외)	학비감면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재학생> 수업료 직전학기 평점평균 2.0미만 10% 2.0~3.0미만 30% 3.0~3.3미만 35% 3.3이상 40% <신·편입생> 입학금 100%, 첫 학기 수업료 50%, TOPIK 4급이상 취득자 수업료 5% 추가	교내

종류	지급대상	지급방법	성적 기준	지급 기간	지급금액	교내·외 구분	
일립생활관장학	외국인 유학생으로 일립생활관(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학비감면외	기준 없음	해당 학기	학기중(계절학기) 100%, 방학중 50%	교내	
학사편입장학	학사편입 및 의료인력양성관련학과 전형으로 입학한 자	학비감면	2.0	2년 (의료인력 3년)	수업료 30%	교내	
하랑장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학생	학비감면	2.0	4년	일정액	교내	
장애학생 교육동행인 장학	장애학생교육동행인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정하여 활동한 자	학비감면외	기준 없음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밀알 장학	A형	①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승인된 자 중 ② 경제사정곤란자로(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③ 인트라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자	학비감면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수업료 100%	교내
	B형	①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자 중 ② 경제사정곤란자로(학자금 지원구간 기초~3구간) ③ 인트라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자	학비감면	별도 기준	재학 중 1회	수업료 50%	교내
	C형	①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 중(개정 2021.11.05.) ② 경제사정곤란자로(학자금 지원구간 4~10구간) ③ 인트라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자	학비감면	2.7	해당 학기	수업료 일정액	교내
봉사장학	총학생회와 학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자	학비감면	2.0	1년	수업료 회장 100% + 50만원 부회장 100% 총무 70% 서기, 회계 50% 부장, 학회장 30% 차장, 부학회장 20% 학회 총무, 서기, 회계 10% 동아리연합회장 10%	교내	
	① 학교 및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학과 및 장학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자 ② 외국인유학생 대표(1명)로 봉사하는 자 (외국인유학생 대표는 직전학기 경건훈련 PASS 및 학사경고 2회 미만자)	학비감면	2.0	해당 학기	수업료 일정액	교내	
근로장학	교내에서 일정 시간 근로하는 자	학비감면외	기준 없음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마일리지장학	성적장학 요건을 갖춘 자로 성적장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한 자	학비감면외	3.8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비교과 부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급대상으로 요청된 자	학비감면외	기준 없음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사회봉사장학	교내·외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학비감면외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CTL장학	본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시행하는 일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은 자	학비감면외	기준 없음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Cheer-Up장학	본교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일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학비감면외	기준 없음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Kokkos장학	①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 (부모 사업실패, 질병, 건강악화, 사망, 국가재난(자연재해, 사회	학비감면 학비감면외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종류	지급대상	지급방법	성적 기준	지급 기간	지급금액	교내·외 구분
	재난),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② 각 학과 또는 장학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					
한씩장학	① 영상(미디어)선교에 비전이 있는 자 ②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이거나 전체 평점이 3.0이상인 자	학비감면	3.0	해당 학기	수업료 일정액	교내
K.B.F 장학 (KOREAN BIBLE FUND)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 실한 자	학비감면 학비감면외	3.0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자이타물장학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 ② 대상자가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학비감면	3.3	해당 학기	수업료 일정액	교내
강인숙장학	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 이념에 충실한 자	학비감면	3.0	해당 학기	수업료 일정액	교내
MDI장학	① 경제적사정곤란자(0~3구간)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실한 자 ② 대상자가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학비감면	2.0	해당 학기	수업료 일정액	교내
이사회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립이념에 충 실한 자	학비감면	3.0	해당 학기	수업료 100%	교내
일립장학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3.0이상)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 립이념에 충실한 자 ② 본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학비감면	3.0	해당 학기	수업료 100%	교외
동문회장학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3.0이상)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본교 설 립이념에 충실한 자 (동문회지정)	학비감면 학비감면외	3.0	해당 학기	일정액	교외
성서장학	성서학과 학생 중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학과회의를 통해 선발된 자	학비감면외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사회복지학회 LOVE&ACTS장 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회의를 통해 선발된 자	학비감면외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교외
나이팅게일장 학	간호학과 학생으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여하고, 품행과 성적이 우수한 학과 추천자	학비감면외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일정액	교내
F.G장학	① 외부장학재단이나 외부인사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 지급 조건, 금액 등은 기부자의 뜻에 의한다. ② 기부자가 ①항의 사항을 학교에 일임한 경우, ¹⁾ 개인선발배점 표에 근거하여 장학대상자를 선정한다.	학비감면 학비감면외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수업료 일정액 일정액	교내 교외
국가장학금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 금액, 지급 조건 등은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비감면 학비감면외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수업료 일정액 일정액	교외
지자체장학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 금액, 지 급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학비감면 학비감면외	별도 기준	해당 학기	수업료 일정액 일정액	교외

* ¹⁾ 개인선발배점표 : <별표3>에 의한다.

[별표 2] 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종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금액
성적장학	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3.85이상인자 * 일반(간호학과), 사회복지, 보육대학원 대학원별 전체 최우수자 * 신학대학원 학년별 최우수자	학비감면	수업료 50%
동문및교직원 입학장학	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본교 교직원	학비감면	입학금 100%
교직원 법인직원장학	본교 교직원, 법인 직원 및 배우자와 직계 자녀	학비감면	수업료 50%
KBC장학 (Korean Bible Community)	유관기관 및 교류기관 직원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	학비감면	수업료 20~30%
가족장학	본교에 부부, 부자, 부녀 형제 등 가족이 2인 이상 재학 중에 있는 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비감면	수업료 30%
신학연구장학	본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모든 자에게 매 학기 지급	학비감면	일정액
간호연구장학	본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모든 자에게 매 학기 지급	학비감면	일정액
근로장학	교내에서 일정한 시간 근무하는 자	학비감면외	별도지정
신입생장학 (보육·사회복지)	신입 1학차 50% 2~4학차는 각 20%씩	학비감면	학기별차등
외국인장학1	외국인 유학생	학비감면	입학금100% 수업료 50%
외국인장학2	외국인 유학생으로 일립생활관에 거주하는 자	학비감면외	일정액
선교단체간사장학	기독교선교단체에서 근무하는 간사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	학비감면	수업료 30%
성서장학	성서선교회 소속 부교역자 중 대학원위원회 추천자	학비감면	일정액
kokkos장학	긴급한 경제사정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거나 학과발전에 기여한 학과 추천자	학비감면	일정액
평교입학장학	본교 평생교육원 졸업자	학비감면	입학금 100%
봉사장학	제7조(대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일정시간 이상 교내 봉사활동을 한 자	학비감면	일정액
사회복지대학원장학	사회복지대학원을 위해 기탁한 장학금으로 학과 발전에 기여한 학과 추천자	학비감면	일정액
외부장학	외부단체 및 개인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 지급 조 건, 금액 등은 기부자의 뜻에 의함	학비감면	일정액
동문회장학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학과 추천자	학비감면	일정액

* 지급금액은 예산상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개정16.08.05)

* 신입생장학, 신학연구장학 - 이중장학시 신입생 및 신학연구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당 % 계산

* 신입생장학 : 연구과정으로 등록된 학생이 다음 학기 정규과정(보육·사회복지대학원)으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신입생

장학금은 1학기만 지급됨(신설 06.12.01)

[별표 3] 개인 선발 배점표

개인 선발 배점표

구분	1. 소득분위 (소득분위 없을시 최저점수부여)		2. 봉사활동(시간)		3. 교육비 부담대상자수	
제출 서류	제출서류 없음 (한국장학재단 신청자료 근거)		사회봉사확인서(6개월이내)		본인 외 가족의 재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점	0분위	50	41시간 이상	25	본인포함 3명 이상	30
	1분위	50	37시간 ~ 40시간	23	본인포함 3명	20
	2분위	47	33시간 ~ 36시간	20	본인포함 2명	10
	3분위	44	29시간 ~ 32시간	17	4. 보호자의 경제활동 부재	
	4분위	41	25시간 ~ 28시간	15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사망확인서, 구인등록필증, 파산 면책결정정보,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5분위	38	21시간 ~ 24시간	13		
	6분위	35	17시간 ~ 20시간	10	보호자 사망	10
	7분위	32	13시간 ~ 16시간	8	보호자 질병·입원·장애	7
	8분위	29	9시간 ~ 12시간	5	보호자 실직	3
	9분위	26	5시간 ~ 8시간	4	5. 부채증가	
	10분위	23	0시간 ~ 4시간	2	부채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구분	6. 보호자 질병·입원 가점		7. 보호자 장애 가점		1억 이상	10
제출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택1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택1		5천만원~1억 미만	8
가점	암관련질병	10	1등급	10	1천만원~5천만원 미만	6
	6개월이상 장기	8	2등급	9	5백만원~1천만원 미만	4
	3~6개월미만	7	3등급	8	5백만원 미만	2
	1~3개월	6	4등급	7	8. 기타	
	1개월미만	5	5등급	6	정성평가	25
	만성질환	6	6등급	5		